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2020. 2. 4.



차 례

I. 추진배경	1
II. 2019년 사업 성과분석	5
III. 2020년 정책목표·추진과제	9
IV.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10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10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운동하는 모든 학생)	28
3.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	39
4.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	66
V. 2020년 추진 일정	72
VI. 협조 요청사항	73
VII. 행정사항	75
<붙임1> 2020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사업 계획	76
<붙임2> 학교체육관련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계획	81
<붙임3~붙임8> 학교장 확인서 등	83
<붙임9> 관계법령(학교체육진흥법 등)	91
<붙임10> 시도별 체력인증센터 현황	104
<붙임11> 시도별 학생 탈의실(환복공간) 확충 예산	105

I. 추진배경

□ 학교체육의 중요성

- 학교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복지'의 중요 전제 조건(OECD 발표, '17.4.)
 - 적당한 체육활동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불안감 감소 등 삶의 만족도 향상
 -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울감 및 불안감 감소, 자존감, 기억력, 인내력, 자기 통제력 증가
 -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시험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비율(2.9%p)이 낮고, 학교에서 아웃사이더로 여기는 비율(6.7%p), 무단결석 비율(3%p),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비율(2.2%p)도 낮음
- 체육활동은 인간권리이며 성장에 중요한 요소(OECD 교육2030, '17.5.)
 - 건강, 신체활동, 인성교육, 가치교육, 위생, 전문체육 등 체육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소재로 활용
 - PISA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체육과 국어 성적은 정적 상관관계
- 운동능력 평가에서 성과가 높은 학생이 더 좋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 더 짧은 반응 시간(reaction time)을 보임(OECD 교육2030, '18.5.)
 - 1회의 체육활동(점심 후 20분 간)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작업 기억과 집중력 향상(특히 아동과 노인에게 효과가 큼)
 - 정기적 체육활동(매일 점심 후 20분 간)을 한 경우 작업 기억과 집중시간이 향상되고 반응 시간은 단축되며, 효과는 더 지속
 - 인생 초기 10년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매일 최소한 60분의 체육활동을 하는 활동적 생활양식(active lifestyle)을 가지는 것이 중요

○ OECD 주요 선진국은 학교체육 강화(OECD 발표, '16.10.)

- 필수학습시간 대비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OECD 주요 국가 중 PISA 상위권 국가에 비해 초 4.4%p, 중 2.2%p가 낮음

구분	한국	OECD 주요 국가 중 PISA 상위권 국가							평균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초	7	11	11	11	10	14	13	10	11.4
중	8	9	9	11	10	12	12	9	10.2

- 학교체육은 자유학기제 실시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주요한 기제
 - 학교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인프라, 재능기부와 연계한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

□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 질병관리본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13.9%로 발표

질병관리본부 제14차('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조사개요)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60,040명 온라인조사
- ❖ (조사결과) 하루 60분 이상, 주5일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3.9%,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7.8%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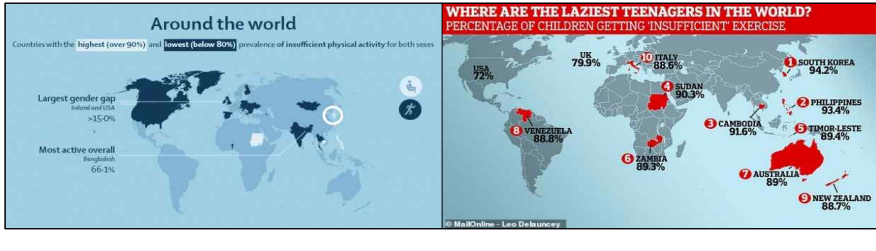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하루 60분 이상, 주5일 이상 신체활동	23.9	9.1	16.8	17.1	5.3	11.5	20.3	7.1	13.9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57.6	31.3	44.9	44.8	17.1	31.6	50.7	23.7	37.8

- ※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 ('16)13.1%→('17)13.8%→('18년)13.9%
- ※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 ('16)37.7%→('17)37.3%→('18)37.8%

- WHO의 신체활동 수준 발표('19.11월)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최하위권임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수준 발표('19.11월)

- ❖ (조사개요) 세계 146개국 11~17세 청소년 대상 신체활동 수준 분석
- ❖ (조사결과) 한국은 하루 동안 신체활동량이 1시간 미만인 청소년이 94.2% (필리핀 93.4%, 호주 89%, 뉴질랜드 88.7%, 이탈리아 88.6%, 미국 72%).



□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스포츠혁신위원회 발족('19.2.11.) 이후 7차에 걸친 권고안 발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 ❖ (1차, '19.5.7.) 스포츠인권 피해자 보호·지원, 스포츠인권기구 설립
- ❖ (2차, '19.6.4.) 학교스포츠정상화
- ❖ (3차·4차, '19.6.26.) 스포츠 인권 증진, 차별 금지, 스포츠기본법 제정
- ❖ (5차, '19.7.12.) 스포츠클럽 육성
- ❖ (6차·7차, '19.8.22.) 엘리트 선수 훈련 개선, 병역·연금 개선, KOC 분리 등

-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안 주요 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 개선,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관리,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전국스포츠대회 개편 방안 마련 등

-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 발표

- (기숙사 운영, '19.10월) 근거리 학생 기숙, 인권 침해, 안전관리 미흡 등 지적하며 인권 친화적 기숙사로의 개선 필요성 제시
- (학생선수 인권, '19.11월) 과도한 훈련, 학습권·휴식권 침해, 언어·신체·성폭력 등 인권 사각지대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시

<참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설문조사

- 의견수렴 설문조사 개요

- 대상 : 학생선수(40,584명), 학부모(36,590명), 지도자(5,004명), 감독교사(4,632명), 학교관리자(6,523명) **합계 93,333명**
- 기간 : 2019. 11. 22. ~ 12. 11.
- 방법 : 시도교육청을 통한 설문조사

- 결과 주요 내용

- (현재 학업(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포함)에 참여하는 정도) 대상별 88.1%~92.5%가 '대부분 또는 모두 참여' 응답
- (운동과 학업 병행 필요성) 대상별 89.3%~99.1%가 '필요하다' 응답
- (학업이 장래희망 실현에 도움 정도) 대상별 89.3%~98.5%가 '도움이 된다' 응답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설문결과 종합 >

- ❖ 현재 학생선수들은 모두(또는 대부분) 학업에 참여하고 있음
- ❖ 학생선수는 운동과 학업 병행이 필요함
- ❖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학생선수의 장래희망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

II. 2019년 사업성과 분석

□ 주요 성과

- (체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초등(3~6학년) 주당 3시간, 중학교 272시간, 고등학교 10단위 이상(6학기 편성) 편성·운영 준수
- 체육수업 사례 공유 및 변화하는 학교체육에 대응 전략 논의의 장 마련

체육교사 대상 체육수업 우수사례 나눔 및 토론

- ❖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 '19.7.12~13, 상명대, 800명 참가) 17개 시도교육청, 체육수업 나눔 및 실기 전문성 신장 등 학교체육 발전 방향 논의의 장 마련
- ❖ (스포츠교육 한마당, '19.8.10, 서울대, 200명 참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학교체육에 대응하는 전략과 체육수업 나눔 및 미래 체육수업의 가치 구현 논의



-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초등 2~6학년 대상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운영
-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장 지원 사업 확대, 초등교원 대상 직무연수 확대, 초등교장 워크숍을 통한 인식 제고 등 추진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 ❖ 연차적 확대 : ('16)3~4학년 → ('17)3~5학년 → ('18)3~6학년 → ('19)2~6학년
- ❖ 실시인원 : ('16)35만명 → ('17)81만명 → ('18)104만명 → ('19)123만명
- ❖ 교원연수 : ('16)377명 → ('17)299명 → ('18)760명 → ('19)810명
- ❖ 이용 수영장 확대 : ('18)858개 → ('19)921개
- ❖ 이동식수영장 지원 : ('18)28교 → ('19)91교



- 생존수영실기교육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 제작·보급
- * 생존수영실기교육이 실시되는 모든 수영장 921곳 보급('19.7.)
- ** EBS와 협업을 통해 생존수영, 수영기능, 구조기능 38편 제작 보급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확대)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권 보장제 운영 및 e-school* 운영 확대
- * ('16)127교→('17)2,370교 40,128명→('18)2,972교 47,333명→('19.12)3,069교 49,090명

e-school 성과발표회('20.1.6.)

- ❖ e-school을 통해 수업에 빠진 부분을 학습할 뿐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 찾아들음으로써 운동과 학업성적이 함께 향상되어 매우 기뻐함(서울체고 박○○)
- ❖ 선생님의 e-school 안내를 통해 빠진 수업이나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준비하였고, 9월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 평균 1.5등급을 받음(휘경여고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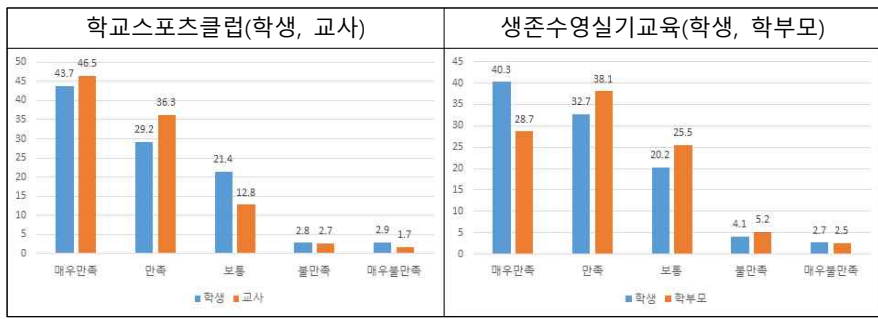


- (탈의실 확충) 학생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21년까지 전국 중·고등학교에 탈의실 100% 확충*
- * 탈의실 설치 현황 및 목표 : ('19)65.8%→('20)86.0% →('21)100%
- ※ 교육시설과와 협업을 통해 '20년 252억원, '21년 43억원 교부(실소요 배분)
- (미세먼지 대비 실내체육시설 확충)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확충
- 실내체육시설 미설치교 979교('17.9.) 중 892교(91%)에 실내체육공간 확보
- ※ 실내체육시설 미확충교 현황 : ('17) 979교 → ('18) 617교 → ('19) 87교
- 통폐합·폐교 예정, 유휴 공간 부족, 행정적 제약 등 물리적으로 확충이 곤란한 87교는 교실에서도 실시 가능한 실내체육프로그램 보급(교보재 포함) ('20.2월 예정)

□ 만족도 조사 결과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43.7%, 만족 29.2%, 보통 21.4%로 나타났고(부정응답 5.7%),
 - 교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46.5%, 만족 36.3%, 보통 12.8%로 조사됨(부정응답 4.4%).
- (생존수영실기교육)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40.3%, 만족 32.7%, 보통 20.2%로 나타났고(부정응답 6.8%),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28.7%, 만족 38.1%, 보통 25.5%로 나타남(부정응답7.7%).

만족도 조사 결과('19.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계

- 학교체육의 주요 분야(학교스포츠클럽, 생존수영실기교육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었음에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미흡

- ☞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소통 강화
- ☞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 협의·수정·보완 추진 할 수 있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및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요구가 증가되었으나,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및 관련 조직별 의견이 다양함

- ☞ 학생선수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한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관 기관(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학교체육진흥회 등) 협의체 구축 및 시도교육청과의 정책실무협의회 실시
- ☞ 이해당사자, 관련조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모색

- 국가시책사업의 시도교육청 이양 확대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체육 부문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한계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학생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확대에 맞추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한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원
- ☞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연구, 전국단위 행사 등은 학교체육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추진 동력 마련

Ⅲ. 2020년 정책 목표 · 추진 과제

추진 목표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1학생 1스포츠, 인권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모든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4대 중점과제	19개 실행과제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1-1. 체육수업 내실화 1-2. 교원 전문역량 강화 1-3. 체육교육 전문인력 지원 1-4.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1-5.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1-7.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동하는 모든 학생)	2-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2-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2-3.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2-4.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2-5.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3.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3-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3-2.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3-3.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투명한 운영 3-4.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4.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	4-1.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4-2.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4-3.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

Ⅳ. 과제별 추진 계획

1.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1-1

체육수업 내실화

□ 체육과 교육과정 내실 운영

- (교육과정 운영)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수업 운영이 다르지 않도록 체육수업 컨설팅, 현장 점검 및 지원 강화
 - * 초등(3~6학년) : 주당 3시간, 중학교 : 272시간, 고등학교 : 10단위 이상·6학기 편성
- (중학교 체육수업 확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2시간 운영하는 학년은 학교장 재량으로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대체 가능
 - 체육 수업시수로 1시간 전환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여건에 따라 교원(기간제 포함) 추가 배치 등 지원
 - ※ 중학교 체육 교과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편성 현황 취합 및 확인(3월)
-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모든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등)는 교육과정에서 체육 10단위 이상, 6개 학기 편성·운영 필수
 - ※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에 적용을 받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가능한 10단위 이상·6학기 편성 권장
 - ※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8단위 이상이나, 가능한 10단위 이상 편성 권장
 - ※ 체육 관련 과목 편성표 취합 및 확인(3월)
- (우수사례 발굴 확산)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생의 조화로운 인성 함양에 기여한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에듀넷(초등, 중등 체육수업 콘텐츠 수록), 학교체육 관련 연구회(유튜브 영상 포함),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 등을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 편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 운영비의 3% 이상 예산 편성 권장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학생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대회 참가 경비, 체육교재, 시설, 기자재, 용품 확보 등
-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은 별도 편성 지원
-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2항,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제2항 참조

□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체육 영역 내실 운영

- 교과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는 경우 특정교과(군)에서 활용 가능한 학기당(학년당) 시수 제한 삭제
-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기준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기본 방향만 유지, 특정 교과(군)내 34시간 이내로 조정가능한 시수를 제한하는 사항 삭제
- ※ 다만, 교과(군)별 시수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할 경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수가 가능하도록 함에 유의
- ※ 특정교과를 과도하게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 학교에서 자유학기 체육활동 편성을 위해 한 학기에 체육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편성하는 시수는 자율적으로 결정
- 체육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을 동시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 가능한 시수의 제한은 두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결정
-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당 또는 학년당 전체 시수* 범위 내에서 조정
- * (자유학기) 51시간 이내, (자유학년) 85시간 이내

-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2019학년도부터 적용)

자유학기, 자유학년, 연계학기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향(공통사항)

- ❖ 자유학기 활동으로 인한 교과(군)별 조정가능 시수는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시간 배당(3년간 총 기준 수업 시수)의 20%범위에서만 활용 가능함
- ※ 다만, 특정교과를 과도하게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여 해당 교과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이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특정교과에 편중된 자유학기활동 편성 지양)
- ❖ 예술·체육 교과(군)를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 가능
- ※ 시수를 조정한 교과(군)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 있음

1-2

교원 전문역량 강화

□ 체육교과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연수 활성화) 관리자 및 교원 등 대상별 학교 체육관련 맞춤형 연수 과정 확대를 통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관리자 연수) '체육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연수를 통해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환경 개선 및 학교 운영
- (교사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 수업 및 실기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와 일반교사 대상 기본 실기 및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연수
- (초등 체육전담 교사 연수) 초등 체육수업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연수를 추진하여 초등 체육활동 내실화 도모
- ※ 시도자체예산 확보(교특)를 통한 초등 체육전담교사 30% 이상 연수 실시 권장
- (원격 연수) 학생의 발달단계 및 진로적성을 고려한 체육계열 진로교육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 및 제공하여 교원의 진로상담 역량 제고
- ※ (20년 연수 개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 (현장 중심 연구 확대) 교과연구회, 교사연구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수업방법 및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연구 확대
- 초등체육 수업개선, 스포츠 인성교육 연구 등을 포함한 체육교과 연구회·동아리 자율 운영
- (컨설팅 활성화) 장학사, 수석교사, 우수교사 등을 활용한 시도교육청별 체육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성화
- 시도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 대상으로 수업지도 능력 제고를 위한 1:1 맞춤형 멘토링제 운영 권장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역량 강화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도강사(교사)의 역량 강화

- (주요내용) 학교체육정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지도, 학교안전교육의 이해, 성폭력 예방교육
- (연수 시간) 스포츠강사(15시간 내외), 일반교사(2~4시간)
- (연수 방법) 이론 및 학교스포츠클럽지도 사례 중심 실기 연수 병행
 - ※ 시도자체예산(교특)을 확보하여 대상 강사 인원 등 연수 추진 계획 마련

□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

- (근거) 국정과제 5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 생존 수영교육 연차적 확대(4)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 (목적)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 연수 추진
- (대상/기간) 초등교원 및 전문직 / '20. 4~10월 중
- (주요내용)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연수 실시
 - ※ 수영교육매뉴얼 활용 생존수영의 이해, 자기구조법, 타인구조법 등
- (운영 예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교특)

<참고> 초등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 유형(안)

생존수영 현장 연수-강, 바다 (각 시도교육청 추진 현장 연수)	- (시간) 15시간, 2박3일(합숙) - (장소) 강, 바다 등 생존수영 현장 - (프로그램 예시) 강바다에서 생존 수영법, 자기 구조법, 타인 구조법, 실제 사고 유형 및 안전한 강(바다) 활동(수영, 보트, 세일링, 카약 등)
생존수영 연수-실내 (각 시도교육청 추진 실내 연수)	- (시간) 15시간, 3일 이상 (비합숙) - (장소)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또는 연수원 수영장 - (프로그램 예시) 차시별 생존수영 교육방법, 자기 구조법, 타인 구조법, 다양한 영법 지도 방안 등

□ 체육계열 진로교육 지도역량 강화

- (배경) 체육계열 진로·진학 희망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체육진로교육 지도역량 강화 방안 필요
- (연수 제공) 국가교육정책* 활성화의 일환으로 체육 진로교육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연수과정 개설 예정
 - * 국정과제(50번)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참고) 원격연수 콘텐츠(국가교육정책분야 학교체육교육)

- ❖ (운영 기관) 중앙교육연수원 누리집 ※ (홈페이지) www.neti.go.kr
- ❖ (운영 일정) 2020. 3~12월(예정)
- ❖ (교육 대상) 중등 교원
- ❖ (운영 형태) 수강인원 제한 없이 상시 수강 신청 및 학습 가능

과정명	차시	내용
체육(스포츠) 진로교육의 이해와 실제	15	· 진학, 직업(취업) 등 영역별 교육내용 및 지도방안 · 영역별 교육콘텐츠 소개 및 활용방법

1-3

체육교육 전문 인력 지원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운영 확대

- (체육전담교사 지정확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운영을 확대하여 체육수업 지도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 초등 체육교과전담교사 지정현황 : '17년 5,360명(96.7%)→'18년 5,113명(98.5%)→'19년 5,032명(84.5%)
 -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제 운영 시 체육전담교사 우선 지정
 - 6학급(1, 2학년 제외) 이상 초등학교는 체육전담교사 1명 이상 지정·운영 필수
- (체육전담교사 지원 강화) 시도교육청에서는 체육전담교사 지정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평가 및 전보 시 우대 등) 권장

- (체육전담교사 연수 강화) 체육교과 전문성이 있는 교사(체육심화과정 이수자, 체육 대학(원) 이수자, 체육부장 및 체육전담교사 경력자) 우선 지정
- 체육전담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육교과 연수과정 이수 권장
- 교육대학의 체육심화과정을 고려하여 체육전담교사 연수과정 마련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역할)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사업기간) '20. 3월 ~ '21. 2월(12개월)
- (주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초, 특수)
- (사업방법) 시도교육청 80%, 문체부 20% 대응투자 사업
- (사업예산) 1,914명×2,414천원×12개월=55,444백만원
※ 시도교육청 44,355백만원(총 사업예산의 80% 수준)
- (경력조회) 스포츠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청소년학대 범죄 경력 조회 필수 실시

초등스포츠강사 자격기준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에서 임용

□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역할)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
- (사업기간) '20. 3 ~ 12월(34주, 방학기간 제외)
- (주관) 시도교육(지원)청, 중학교
- (담당교사 배치) 스포츠강사의 원활한 수업 운영과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교사(일반교사 등)를 배치하여 지원
- 스포츠강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불가할 경우, 담당교사가 '동아리활동'란에 특기사항 등을 입력

- (사업예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교특)
- 강사 1인당 수당 : 시간당 30천원(세전)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지침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체 활동으로 해당학교 교사는 강사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속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할 경우 학교장과 계약 수정 체결
- ❖ 특수학교 중학교과정 스포츠강사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편성 운영
- ❖ 중학교스포츠클럽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보조
- ❖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사의 경우,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단독 수업 가능

□ 국립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으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대상학교 및 예산) 국립중학교 7교, 총 250,880천원 지원
- 중학교스포츠클럽(161백만원) : 7교×6종목×4시간×32주×30천원
-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설이용(90백만원) : 7교×2클럽×200천원×32주

1-4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 추진 배경

- 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 필요
- 학생, 학부모의 수영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 초등학생 학부모 중 97.5%가 생존수영실기교육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86.9%가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19.12., KICE)

□ 운영 계획

- (운영 대상)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20년 1~6학년으로 확대 운영
 - ※ ('17) 81만명 → ('18) 104만명 → ('19) 123만명 → ('20) 134만명(예정)
- (교육내용)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을 포함한 실기교육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권장
 - ※ (생존기능)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능, (수영기능) 수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 (구조기능) 수상활동 시 타인을 돕기 위한 기능
 - ※ 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교육 매뉴얼('19년 보급), 생존수영 동영상 콘텐츠(EBS) 적극 활용
- (지원체계 구축)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및 대안적 수영시설 확보 방안 강구
 -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수영장 및 버스업체 계약 체결 등 교육청 주도 업무추진 권장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행정 지원 사례

- ❖ (○○교육청) 교육청 차원에서 수영장 및 버스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주도적 업무추진 방식(전담팀 운영)으로 단위학교 참여가 용이하게 지원
- ❖ (○○교육지원청) ○○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연중 활용
 - 지역수영시설이 부족한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 등 조립식 수영장 적극 활용
- (예산지원) 10,260백만원
 -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교·강사 연수비 등 7,710백만원
 - ※ 교육부 특교 10%, 시도교육청 교특(지자체 예산 포함) 90% 대응투자
 - 이동식 생존수영실기교육 지원 2,550백만원

< 초등학교 학생 수영교육 지원 예산 >

(단위 : 백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생존수영	695	497	742	528	199	451	239	80	1,276	119	348	616	258	388	656	382	236	7,710
이동식 지원	200	250	0	250	0	200	250	0	250	200	150	300	0	100	200	200	0	2,550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예시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은 초등 수영실기교육 1~6학년 확대 실시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 생존수영실기교육 직무연수, 수영교육 우수 선진교사 연수 등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지자체 예산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조례 등을 통해 이용료 감면 추진

□ 개선 사항

- (강사 자격)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강사 자격을 공통 적용하여 현장의 안정적 정착 및 교육의 전문성·안정성 확보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강사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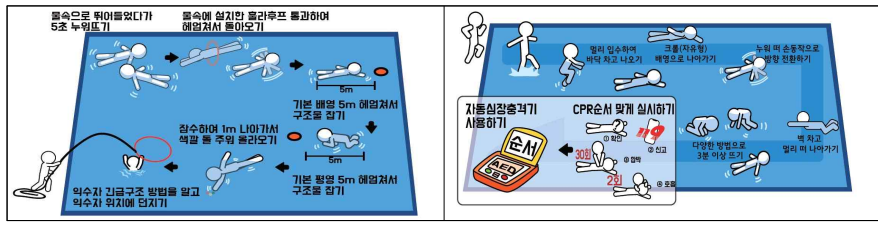
- ❖ 초등 생존수영교육 강사는 법률 상 자격 소지자*와 민간 생존수영 지도자격 소지자**를 우선 위촉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수영선수이력 등 실기 능력을 갖춘 자를 포함할 수 있음
 - * 수상구조법(수상구조사),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 수상레저안전법(인명구조요원)
 - ** 생존수영 민간자격 주무부처인 해경청에 등록된 자격 ('19년 기준 35개)

- 또한, 민간단체에서 부실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존수영 민간자격 등록 인증기관인 해경청과 교육부가 협업* 추진
 - * 생존수영 지도자격 이수 요건(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수영장 수질)**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수영장 수질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6)'의 수영장업 수질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성 확보
- **(교육지표 설정)** 시도별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교육지표를 설정하여 교육의 당위성을 제고하고, 실기교육의 지속적인 동기 부여
 - 교육부 제시 표준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생존수영실기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도달할 지표를 시도별 수영교육 추진 상황에 맞게 설정·운영

교육지표 설정 예시(○○교육청)

❖ ('20년 예정) 교육부 표준프로그램 3, 4학년 총괄평가 6개 항목 중 3학년은 3개 이상 통과 학생 60% 이상, 4학년은 6개 통과 학생 60% 이상 목표 설정



1-5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구, 체육중점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 고시일 2019.12.27.)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

□ 운영 개요

- (기본방향)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 대응 및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 (내용)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소질 계발 및 진로 설계 지원
 -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및 체육 관련 진로·진학을 준비하는 일반학생

□ 운영 형태

- **(학급구성형)** 학교 내에 체육중점학급 구성·운영
 - 체육계열 진로 진학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고 체육 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집중지도
 - 체육중점학급 당 학생 수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명 내외(최소 15명)로 구성하여 운영
- **(과목편성형)** 별도의 학급 구성없이, 교과 교육과정 자율 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전문교과 등)를 추가 편성·운영
 - 자율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를 편성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초과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육교과 선택 기회 보장
 - 체육관련 진로 진학 특강, 스포츠 관련 캠프 및 체험활동 등 운영

□ 예산 배정 및 운영

- **(예산 지원 현황)** 10개 교육청 46교 85학급, 1,600백만원 지원
 - (예산 편성 기준) '20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구, 체육중점학교) 운영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
 - * 민주시민교육과-4312(2019.6.18.) 2020년 체육중점학교 운영 희망 수요조사 실시
 - (교부 내용) 학급구성형은 **학급당 20백만원** 내외, 과목편성형은 **학교당 15백만원** 내외
 - ※ '19년 이월액 반영(부산 20백만원, 강원 40백만원, 경북 20백만원, 경남 20백만원)

- (체육계열 진로교육) (9청×5백만원=45백만원)+25백만원(추가교부)=70백만원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교육청 기본 운영비 5백만원 교부

※ 주관교육청(서울) 10백만원, 10교 이상 운영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5백만원 추가 교부

<2020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예산 배정 및 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수요조사 결과 및 예산 산출 현황							2020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현황						
	학급구성형		과목편성형		교육청 운영비	이월	합계	학급구성형		과목편성형		소요액	교부액	차액
	학급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서울	22	440	7	105	20	-	565	7	19	4	6	460	565	105
부산	9	180	-	-	5	-20	165	3	9	-	-	165	165	0
대구	2	40	-	-	5	-	45	1	2	-	-	45	45	0
인천	7	140	3	45	10	-	195	6	9	1	2	205	195	-10
대전	1	20	3	45	5	-	70	2	2	1	3	60	70	10
경기	13	260	3	45	10	-	315	7	12	3	3	295	315	20
강원	4	80	1	15	5	-40	60	2	4	1	2	60	60	0
충남	5	100	1	15	5	-	120	3	5	1	2	120	120	0
경북	4	80	-	-	5	-20	65	3	4	-	-	65	65	0
경남	0	0	-	-	0	-20	0	-	-	1	1	0	0	0
합계	67	1,340	18	270	70	-80	1,600	34	66	11	18	1,475	1,600	

- (차액처리) 예산반영 이후 수요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은 반납 등의 절차로 처리하고, 부족한 예산은 시도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정상 추진

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기본 방향

-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종목 선정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신체능력을 반영하는 종목 선정 및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학교 계획 수립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운영 계획

- 학교급별 신체발달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종목 선정 및 수업 활용
 -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 여학생의 감성을 자극하여 참여가 쉬운 종목을 수업에 활용
 - 중·고등학교 혼성학급에서는 학생들이 희망을 반영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수업을 운영하거나, 혼성으로 운영 가능한 종목 활용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도교육청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 여학생 대상 기자단, 스포츠리더단, 심판아카데미, 한마당 등 여학생의 감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예시)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교육청)>

- ❖ 목적 : 여학생 스포츠 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자존감 함양
- ❖ 주요내용 : 표현·도전·감성진로 마당, 여신50+운동, 변형 경기 및 체험 등
- ❖ 기대효과 : 여학생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 및 참여 확대 방안 공유

-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지정·운영 권장

* 매주 특정 요일(예: 수요일)에 체육관, 운동장 등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여학생 우선 사용

- 여학생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제5항

-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여학생 재학학교의 경우 2종목 이상 여학생 특화 종목* 운영 및 교내 대회 운영

* 넷볼, 킨볼, 치어리딩, 요가, 댄스, 방승댄스, 줄넘기, 자전거, 롤러, 배드민턴 등
 ※ (특화 종목) 일반 종목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 종목 외에 여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종목을 의미

〈(예시)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교내 리그(○○중)〉

- ❖ 운영 프로그램 : 학급대항 혼성 축구리그, 여학생 넷볼 리그 연중 운영
- ❖ 주요내용 : 학생 자치회 중심의 점심시간 이용한 학년별 학급 리그 경기
- ❖ 주요성과 : 학교생활의 활력과 긍정 분위기 확산, 학교폭력 감소, 자치능력 신장

- 지역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여학생 참여 종목 5개 이상 운영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 여학생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학생 특화 종목 우선 고려

□ 환경 여건 조성

- (예산지원) 여학생의 운동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 스포츠 행사, 캠페인 활동 등 시도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112백만원(시도별 여학생 수 비율에 따른 지원)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 >

(단위 : 백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여학생 체육	168	80	71	80	59	57	51	40	0	55	57	68	62	61	71	90	42	1,112

- (탈의실 설치) 여학생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탈의실 설치 확대
- '21년 상반기까지 전체 중고등학교 탈의실 100% 설치 지원
- * 시도교육청 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 반영 추진('20년~)
- ※ '19년 65% → '20년 86%(252억원) → '21년 100%(43억원) (붙임 11 참조)

1-7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측정 의무)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 및 측정결과, 운동처방 등 안내
- PAPS 측정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체력진단 처방을 위해 개인별 결과 출력 제공 의무화
- (측정 대상) 초 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사 실시
- ※ 단,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측정 종목 및 시기) 체력 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필수평가 - 매 학년초 실시>

체력요소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1. 왕복오래달리기 2. 오래달리기-걷기 3. 스텝검사	4.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5. 종합유연성검사	6-1. 팔굽혀펴기(남) 6-2. 무릎대고팔굽혀 펴기(여) 7. 윗몸말아올리기 8. 악력	9. 50미터 달리기 10. 제자리멀리뛰기	11. 체질량지수(BMI)

<선택평가 - 학교장 결정>

검사항목			
심폐지구력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심박수 측정기 세트 활용	체지방 측정기 활용	자기기입식 기록지 활용	자세평가 보조도구 활용

- **(평가결과의 기록)**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 내실 운영)** 저체력 학생(PAPS 4·5등급)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운영 대상) 저체력 학생 및 비만학생
 - (환경 제공)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신체 활동 공간 재구성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측정 내실화) 교내대회 운영 및 표창, 수업 연계, 국민체력 100 사업 연계 등 건강체력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사후 기록 관리 및 처방 제공 등을 통해 건강체력검사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 **(우수학생 표창)**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우수학생은 학교장 표창 수여*를 통해 학생의 자율적인 체력증진 장려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표창 계획을 반영하여 운영

PAPS 우수학생 학교장 표창 (예시)

❖ PAPS 최우수 학생, 전년 대비 최우수 체력 향상 학생, 측정 종목별 최우수 학생, 측정 종목별 향상도 최우수 학생 등 학교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표창함으로써 학생의 체력 증진 촉진(단, 학교 간 평가는 지양)

- **(결과보고)** 시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 시행 결과를 취합(나이스 통계처리)하여 **매년 12.31.까지 교육부로 전송**

□ **건강체력 교실 운영 의무화**

- (주체) 각급 학교(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등 별도지정)
- (대상) PAPS 측정결과 저체력(4~5등급) 또는 비만관정을 받은 학생
- (방법) 매년 학교별 건강체력 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건강체력교실 운영 시기 및 담당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지도 방안 등
 - ※ 건강체력 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 ※ 교내 스포츠클럽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토요스포츠타이 등) 참여 권장 등 컨설팅 실시
 - 대상 학생의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체지방 분석기 등)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 체육단체·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체력증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예산) 건강체력교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 확보
 - 법률*에 의거 **단위학교 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므로 건강체력 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책정 및 확보
 - *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모니터링) 시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건강체력교실 운영 여부 및 운영 실시 현황 모니터링 실시

〈참고〉 국민체력 100 사업 소개

- ❖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 ❖ (서비스 내용)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과학적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 등의 서비스 제공
- ❖ (신청방법) 해당 지역 내 설치된 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서비스 예약 및 신청
 - (측정지원) 대상학교 PAPS 측정 지원
 -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에서 요청 시 학교로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단위학교가 개별 방문하여 센터 내 운영 중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
- ❖ (문의처) 지역별 체력인증센터 문의(시도별 세부현황은 붙임 10 참고)
 - ※ 홈페이지: <http://nfa.kspo.or.kr>, 대표센터 ☎ 02-410-1014

〈참고〉 시도별 체력인증센터 현황

※ 기준일: '19.12.31. 기준

시도	수량(개소)	센터 현황
서울	7	송파, 마포, 성동, 서초, 금천, 노원, 동작
부산	7	남구, 북구, 사하구, 사상구, 광역시
대구	1	달서구
인천	1	연수
광주	3	광산구, 동구, 북구
대전	1	서구
울산	1	남구
세종	1	세종
경기	6	화성, 부천, 오산, 성남, 의정부, 시흥
강원	4	원주, 강릉, 삼척, 춘천
충북	4	청주, 영동, 충주, 증평
충남	3	천안, 아산, 계룡
전북	3	남원, 전주, 군산
전남	4	목포, 순천, 곡성, 나주
경북	4	포항, 안동, 김천, 구미
경남	2	창원, 사천
제주	1	제주

※ '20년 28개 체력인증센터 추가 증설 예정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동하는 모든 학생)

2-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내실 운영(학생주도 활동 포함)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전담교사 지정 운영) 각 학교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 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 지급
 - (역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스포츠강사 교내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체육교사 외), 강사 연수 등
- (결과보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급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을 취합(나이스 통계처리)하여 매년 12.31까지 교육부로 전송 완료
 - ※ 등록 및 활동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단위학교에 사전 입력 안내

□ 학교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방향) '1학생 1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하여 방과 후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급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 남녀공학인 경우 여학생 특화 종목 2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전담교사 운영)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하여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단위 연수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기획 등의 역할을 하며 지도 활동비 지원
 - (사업예산)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자체예산 확보 지원
- (시설 이용)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및 인근 체육시설 이용 확대
 - (유휴 공간 활용) 학교의 유휴교실 및 체육활동 이용 가능 공간 (옥상, 테라스, 빈 건물 등) 등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 다만, 교육활동 장소 선정 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선정
 - (경기 관람)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 관람 가능
 - (사업예산)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자체예산 확보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강사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담당 스포츠 강사 및 일반교과 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연수 주체/시기) 시도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 ‘20. 3~7월 중
 - (연수 대상) 스포츠강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교사
 - (사업예산)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자체예산 확보 지원
 - (연수 내용) 학교체육 정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지도,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 종목별 지도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연수계획)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수립·시행하되, 스포츠강사에 대한 연수는 추진 권장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 일반교사(체육교사 외)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로 종목별 2시간 이상 자율연수 운영(학교별 운영 가능)

- (학급단위 운영)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가 할 수 있는 단체종목 중심으로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권장
- 체육교사 외에 일반교과 교사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1교사 1종목 매칭 운영 권장
 - ※ 일반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학교체육 활성화 분야 표창 등 적극 유도)
- 안전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및 대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운동 및 안전교육 철저
- (학생 주도적 운영) 전담교사가 운영을 관리하고,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진행하는 학급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
 - ※ 교내리그 심판 등으로 활동한 학생은 실제 활동시간을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인정시간 처리

- ❖ (합산방식)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아침, 점심 등에 활동한 시간의 합산이 같은 날에 한하여 학교 급별 기준 수업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개별 활동 시간은 자체로 인정되어 총 합산에 반영
 - * 아침시간, 점심시간 등 일정량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1회 활동 시 최소 20분 이상 확보 권장
- 현행 NEIS 체육시스템은 틈새 시간을 활용한 개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위처럼 같은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 처리 중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인정 방식 변경 권장 〉

변경 전*	고등학생이 A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고, B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였으면 합산이 50분이더라도 같은 날 활동이 아니므로 활동 시간 전체 불인정
변경 후	고등학생이 A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고, B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였으면, 합산된 50분이 활동으로 인정되어 1시간 이수로 실적 인정

* '17년 까지 시도에 안내된 학교스포츠클럽 매뉴얼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길잡이 활용)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형,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원용 교수법 자료 및 연수 프로그램 활용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길잡이

- ❖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 : (번호 793)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개선 방안 연구
- ❖ **(주요내용)** 단위학교용 운영매뉴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생용 학습자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서(체육교사용) 등
- ❖ **(검색방법)**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개선 방안 연구' 검색]

2-3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운영 대상) 초·중·고등학생
- (상시적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상시적으로(1, 2학기) 운영**하여 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학년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저학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참여 확대
- (사업예산) 총 1,450백만원(시도별 학생 수에 따른 차등 교부)
 - 시도의 여건, 종목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청·교육지원청 리그 운영 지원비 포함
 - ※ 리그운영 지원을 위해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가능
 - <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리그 운영 지원 >

(단위 : 백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역 리그	230	83	69	83	48	45	35	15	395	41	46	64	54	51	70	100	21	1,450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길잡이 활용)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윤리·인성지도, 지역 특성별 리그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 종목별 지도 길잡이(넛볼, 티볼, 풋살, 피구, 줄넘기, 창작댄스, 플로어볼) 활용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침서 검색

- ❖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 (번호 841)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침서
- ❖ 검색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침서' 검색)

- (지역체육시설 활용 확대)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 강화

* 수영, 스케이트, 사격, 볼링 등 학교 밖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클럽 지원

2-4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구,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 **제13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 (대회 운영) 경기 승패 위주가 아닌 **학생축제 형태**의 경기 운영
 -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연계 체험활동이 결합한 축제형 대회 문화 조성
 - ※ 문화행사, 사제 간 대회, 종목별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명사특강 등
 - (시상 폐지) 순위에 따른 시상을 폐지하고 페어플레이상 등 시상
 - (운영 방식 개선) 다양한 리그제 도입 통해 참가 학생들이 경기를 최대한 즐기고 축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너먼트 폐지로 순위 결정 과정 지양)
- (운영 종목) **23개 종목 예정**(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학생수요자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종목 운영으로 내실화
- (사업예산) 총 2,750백만원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예산 >

(단위 : 백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국 총계	222	192	182	138	155	138	138	171	0	171	185	185	171	171	168	138	225	2,750

※ 시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 회의와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의 협업을 통해 제13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방법, 종목 등 개선 예정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목적)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및 지역대회 선수등록, 참가확인, 경기기록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화된 학교스포츠클럽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지원
- (현황)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관리·활용을 위해 구축 완료('19.10월)
 - ※ '19년도 기준 약 2만 여명의 학생 및 지도자 회원가입
- (주요역할) 대회참가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대회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정보 관리, 대회 규정, 대회 일정, 경기 결과 및 기타 공지 안내
- (추진방향)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정보시스템 고도화
 - ('20년~) 지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이용대상 범위 확대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대회 및 회원관리 메뉴 정교화 추진
 - * 홈페이지 URL : <https://www.schoolsportsclub.or.kr>
- (추진기관) 학교체육진흥회

2-5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사업목적)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으로 확장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기회 확대
 -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또래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제공하여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건강한 성장 기회 부여
- (사업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가능
 - 초·중·고 학교급간 연계, 인근 학교 간 연계,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방식 다양화를 통한 학생 참여 확대 유도
 - ※ 단위학교 위주가 아닌 인근 지역 또는 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 등의 운영 방식을 통해 다양한 종목 선정과 활동 프로그램 계획 수립 후 실시
 - 운영기간, 참가 모집 학교(급), 교육내용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도모
 - ※ 운영시간은 방과후 시간, 토요일, 방학기간 등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가능

'18년도 세종시교육청 운영사례

❖ 초·중·고 연계한 농구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 운영 기간, 일정 예시

☞ (운영기간) 학기형(1학기 운영)

☞ 예시1) 1주 토요일 : 초등, 2주 토요일 : 중등, 3주 토요일 고등, 4주 토요일 : 희망학생

☞ 예시2) 매주 수요일 17:00~19:00 초등, 2,4주 토요일 14:00~17:00 중등, 2,4주 목요일 18:00~21:00

- 기능, 경기규칙, 전술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자체 경기를 통해 스포츠맨십,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사업 안내

- (사업예산) 총 800백만원 (사업을 희망하는 16개 교육청 50백만원 정액지원)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단위 : 백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마을스포츠클럽	50	50	50	50	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800

- 강습, 대회운영, 경기관람, 스포츠문화 체험 등 집행 가능

□ 스포츠캠프 운영 확대

-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운동부시설 등을 활용한 스포츠캠프를 개설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 제공
 - 초·중 학교운동부 육성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운동부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캠프 개설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여름·겨울방학 중 소속 학교 스포츠 캠프 프로그램 운영 참여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사회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캠프 운영

○ 운영방안

-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포츠캠프 운영교 선정 및 지원
- 종목과 일정은 운영교에서 선정(사격, 테니스, 볼링, 육상, 수영, 축구, 연식야구, 농구, 펜싱, 호신술, 다이어트체형교정, 리듬체조, 양궁 등)
- 여름·겨울 방학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학생 접근성 향상

□ 단위학교 자율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시('07년~)
 -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 질병예방, 비만감소를 위해서는 하루 6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 필요
 - ※ 미국(CDC), 캐나다 : 청소년은 하루 최소 1시간 신체활동 권장
 - ※ ('70년대) 3일/주 ⇒ ('90년 이후) 5일 또는 매일/주 변화 추세

-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실천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한다."

- (신체활동 참여)정규수업 외, **의도적 계획** 하에 60분/일 이상 운동
- 단위학교 특화된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학교단위 7560+운동을 통해 즐넘기, 건강달리기 등 아침 수업 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 학교단위 자율 체육프로그램 실시 확대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교내 전 지역 활용 순환운동 코스 개발·조성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쉬는 시간 확대를 통해 중간체조 프로그램 운영

❖ 국외 사례

- (캐나다) 하루 최소 30분의 체육활동 시간 확보
- (영국) 주당 최소 5시간 체육활동 관련 시간 확보
- (뉴질랜드) 신체활동 활성화 캠페인 및 프로그램(ACTIVE Schools, Sportfit) 운영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 ❖ (사업목적) 생활체육 저변 위에서 전문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사업내용) 지역의 주요 체육시설(공공·학교)을 거점으로 회원(지역 주민, 체육진로 희망 학생 등)에게 체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지원
- ❖ (주관기관)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 ※ 문의 : 대한체육회 (02-2144-8222~4, 8228) 및 각 시도체육회
- ❖ (운영현황) '13년 시작 사업으로 현재 98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중, '20년 74개소 신규 선정 예정
 - ※ '20년부터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63개소) 신규 선정·지원 예정(사업계획 마련 중, 1/4분기 내 교육청 등 대상 사업 공고 예정)
- ❖ (홈페이지) 스포츠클럽종합정보시스템(<https://sportsclub.sports.or.kr>)

- (7560+ 운동 실천교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건강체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 실천
- (사업예산) 381교×5백만원=1,905백만원(신청학교 수 비례 지원)

< 7560+ 운동 실천교 지원 >

(단위 : 백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560+ 지원	200	100	150	100	100	50	30	20	0	90	70	220	125	150	200	150	150	1,905

※ 우수 프로그램 공유 및 홍보를 통한 일반화

□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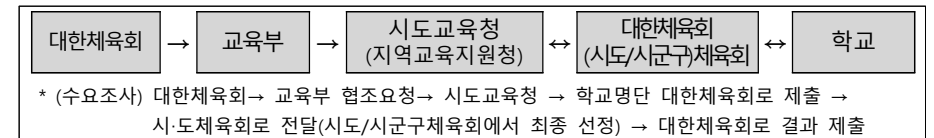
- (사업내용) 선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스포츠클럽 등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지역단위 대회
 - ※ '19년 8개 시도(경기, 경남, 대전, 부산, 세종, 인천, 제주, 충남) 9,101명 참가
 - (주최/주관/후원)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문체부·교육부(예정)
 - (사업효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믹스매치를 통한 통합의 의미 배양
- (사업추진) '20. 3월중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 확정 후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 예정, 4월 이후 시도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 개최

□ 학생심판 양성교육

- (사업내용) 심판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심판 양성 교육 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수증 발급
 - ※ '19년 7개 종목 192개교 4,245명 참가
 - (주최/주관/후원)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문체부·교육부(예정)
 - (사업효과) 종목에 대한 저변 확대, 학생 자율적 리그 운영 지원
- (사업추진) '20. 3월중 전국 초·중·고 대상 학교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안내

- 사업개요
 - 기간 : 2020. 3월 ~ 12월(10개월, 30주간)
 - 장소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사업내용 :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사업 안내, 시도(시군구)체육회에서 최종 운영학교 선정
 - ※ 전년도 학교 협조도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시도(시군구)체육회에서 결정
 - 감사지원 및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택1), 1일 2시간 30주
 - ※ (우선선정) 여학생 프로그램, 농산어촌 학생대상 특화프로그램, 수준별 프로그램
- 참가자 모집 : 해당 학교별 모집(가정통신문 발송 등)
- 학교선정 절차



- 프로그램운영 장소 : 해당 초·중·고·특수학교(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 프로그램운영 방법 : 총 30주간, 1개 종목(강사) 지원, 운영 기간은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프로그램 개설 기준
 - 참여인원 : 15~20명 모집(15명 미만일 경우 개설 불가)
 - ※ 단,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2~3개 학교 묶어서 운영 가능
- 프로그램 배정 : 전국 3,664개 초·중·고·특수학교

(단위 : 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 수	283	305	236	135	118	153	126	31	564	195	145	218	157	345	207	380	66	3,664

3.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3-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2019학년도(현행)	2020학년도(변경)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 1/3 범위(63~64일)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선택 실시 가능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table border="1"> <thead> <tr> <th>학교 급</th> <th>초</th> <th>중</th> <th>고</th> </tr> </thead> <tbody> <tr> <td>허용일수</td> <td>20일</td> <td>30일</td> <td>40일</td> </tr> </tbody> </table>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0일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0일	40일					
	○ 기존 적용사항 유지							
	- (지각·조퇴·결과 처리)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지각·조퇴·결과 합이 3회 가 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 사용으로 간주							
	- 국가대표는 허용일수 초과 가능							

※ '18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전수조사 현황(1인당 평균) : 초 5.1일, 중 12.7일, 고 20.8일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고, 상기 제시된 일수는 의무 허가가 아님

○ 국가대표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허용

-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 가능

※ 학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국가대표 선발 인정' 공문을 근거로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음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처리

○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 현행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관리 메뉴와 연동 되도록 하여 나이스 기능 개선
- 담임교사와 경기종목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 구축
- 기존 학교체육(운동부 관리 등) 관련 나이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점진적 축소 추진

-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전국대회 전환사업(문체부)과 연동하여 출석인정결석 일수도 '21학년도 이후 점진적 축소 예정
- ※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제도 폐지를 목표로 초·중은 '23년까지 모든 수업 참가, 고교는 '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연계한 학점 이수 방안 마련 등 수업결손 최소화 지속 추진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 (기본방향)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

- 단,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상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교육청에 보고 의무화
- ※ 훈련 참가는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내에서 실시 가능

○ (보충학습)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1일(6교시) 수업결손 발생 시 e-school 수강 3시간 이상

※ (관련근거)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2017.4.7. 장관결재)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 2항

○ 최저학력제 개요

- 적용대상 : 초(4~6학년) · 중 · 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학교급 \ 적용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 적용교과 : 초 · 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교무회의, 내부결재,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등)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

- 최저학력 기준* : (초) 50%, (중) 40%, (고)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과 비교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 적용시험 :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학교급별 운영 방안

-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 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지필고사 미실시 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위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직후 학기에는 최저학력 미적용
※ (예시) 작년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 경우,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 미적용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사회 ⇨ 수학·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교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시도교육청)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위학교에 안내

※ (한국교육개발원) e-school 시스템 run-up(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과정을 활용하여 과목별로 이수가능함을 단위학교에 안내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 교과별로 중학교(5교과)는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단위학교)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

※ ('17년~ 전면시행) e-school 시스템 구축 후 적극 활용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대회참가 제한범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시기 및 방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학생선수에 대한 제한 및 해제 방안 등을 사전 안내

(예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제한 및 해제 방안

❖ 경기대회 출전 제한범위 및 예외사항

- (출전 제한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출전 제한 예외사항)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학생 출전제한 해제

- (운영시기) 학기말 성적 공개(확인) 시점부터 방학종료 전까지
- (운영방법) 시도 여건에 따라 e-school(run-up 과정) 시스템 운영, 특별보충 수업, 온라인 학습, 과제물 부여 및 평가, 대학생 멘토링 등 활용
- (참가제한 해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출결, 학습 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 (결과처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미도달 현황과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현황을 내부결재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조

- (단위학교)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와 허용일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승인
- (경기단체) 각종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주관 경기단체에서는 학생선수가 학교장 확인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대회참가를 불허
- (시도교육청)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 구축·제공*
- * 학력증진 및 체육관련 진로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제공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절차

- 학교장은 1, 2학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후 관련사항 내부결재 처리

(예시) 최저학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관리

학년-반	이름	종목	최저학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도달여부	미도달 과목수	이수여부	이수 시간
4-1	김메달	00	도달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5-3(초) 2-1(중,고)	동메달	00	미도달	3	이수	36(초,중) 60(고)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 졸업한 학교로 최종학년(기)*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요청 시 적극 협조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최저학력

□ 학생선수 학습지원 e-school 운영

○ e-school 시스템 운영 개요

- (대상학생)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 ※ 국가대표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학생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수강 가능
- (수강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소양)진로분야 등
 - ※ 중학교 66과목, 고등학교 89과목
 - ※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전체 교과콘텐츠 제공 예정
- (대상 학교) 학교운동부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구 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교)	학생(명)	학교(교)	학생(명)	학교(교)	학생(명)
2016	127	7,721	61	2,865	66	4,856
2017	2,370	40,128	1,440	20,604	930	19,524
2018	2,698	46,559	1,647	24,557	1,051	22,022
2019.12	2,830	47,580	1,723	24,944	1,107	22,636

※ 전년대비 e-school 운영학교 4.9%, 학습자 2.2% 증가

○ e-school 시스템 활용

- 학생선수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제공,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교차 수강(고↔중), 진로교육 콘텐츠 등으로 활용
- 학생선수 활동 중단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e-school 활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서 가입·수강 지원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및 위탁교육 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학습에 참여
- * 진천선수촌 내 학습지원센터 설립 추진 중(문체부)

○ e-school 학습 내실화를 위한 학습 시간 조정

- (목적) 학생선수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대리수강을 방지하여 e-school이 학력증진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 (방안) 정규 수업시간 및 심야 시간대를 학습시간에서 제외
- e-school 학습 시간대

구 분		학습 시간대
평일	아침시간	06:00 ~ 09:00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및 저녁시간	15:00 ~ 02: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익일 02:00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직무연수) e-school 운영자 연수 개최하여 직무역량 강화 도모
 - (학습 내실화) 단위학교 장학지도 및 컨설팅 시 ‘학습노트’ 작성 여부 지도·점검하여 학생선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예산) 680백만원(17청×40백만원, 교특) ※ [주관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

- (추진배경) 현행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은 경기대회 입상실적, 실기능력 위주 선발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선수가 학업에 소홀 하는 경향
- (규정개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시전형 시행을 위해 시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배정에 관한 규정 및 기본계획 개(제)정 시행
- (내신반영) 시도교육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내신 성적(교과 및 출결) 배점 및 반영 비율 정하고, 입시전형에 실질적 반영 적용
 - ※ 체육고등학교 선발전형에서는 일정 비율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음
- (학생 수요 반영)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에서 학생선수에게 희망학교 지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체육특기자 배정) 시도교육청에서는 배정 원칙(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특정학교 지원 집중 시 이를 사전예고 후 시행
 - ※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정학교 지원 집중 시 내신 성적, 경기대회 입상실적, 실기와 면접 등의 배점 및 반영 비율과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 관행적인 학교운동부지도자 간에 협의를 거쳐 임의 배정하는 방식 금지
- ※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학생선수 수,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 제정·시행

-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 공고 시에 체육특기자 배정 기준도 함께 안내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입시에 관한 상세 정보 제공

3-2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예방교육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교육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성희롱·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학비리 예방교육 등
 - (주관기관) 시도교육(지원)청
 - ※ 주관기관에서는 교육이수여부를 재계약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으로 이수자 명단 제공
 - (교육횟수) 연 1회(2시간) 이상
- [학교운동부지도자(학부모)·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교육내용) 학생선수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 (법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주관기관)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교육(지원)청 주관 가능
 -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 단위학교 학교교육계획에 인권교육 내용 반영토록 지도 강화
 - ※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반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실시

○ [학부모]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 (교육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입학비리 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 (주관기관)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 담임교사, 감독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을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고민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면(상)담일지 기록)
- 학생선수에게 건강관리,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진로진학 등에 관한 개인별 면(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유지 관리
- 학생선수·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장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의무화)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교육청(학교)의 의무 참가
- 학교운동부 방문 점검 시 기본교육,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재육성팀(☎ 02-410-1503, nest.kspo.or.kr)

○ 교육대상 및 인원

- (기본교육) 신규 및 기본교육 미 이수자 100명*4회
- (보수교육) 기본 교육 이수자 160명*5회
-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

○ (교육기간) '20. 6 ~ 11월, 기본교육(30시간), 보수교육(20시간)

○ (교육비) 교육비, 숙식비 등 지원(교통비, 일비 등 출장비 제외)

○ (교육접수) 체육인재아카데미(<https://nest.kspo.or.kr>)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및 교육일정은 추후별도 공지 예정
- ※ 교육시작 5일 전 접수 마감, 이후 교육 변경 및 취소 시 공문으로 사유서 제출

○ 과정별 교육과정

- (기본교육) 학교운동부의 이해, 지도자 자질 및 전문성 교육

영역	강좌	시간
학교운동부의 이해 [8시간]	학교운동부 정책 방향	2시간
	학교운동부 운영	2시간
	학생선수상담의 실제	2시간
	학생선수의 이해	2시간
지도자 자질(역량)교육 [14시간]	스포츠윤리와 코칭철학	2시간
	스포츠 인권[(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
	운동상해 예방과 관리	2시간
	스포츠테이핑	3시간
	교양(전문가)특강	2시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3시간
	운동생리학의 적용	2시간
지도자전문성교육 [8시간]	운동 역학의 적용	2시간
	스포츠 심리학의 적용	2시간
	훈련 설계 및 평가	2시간
	합 계	14과목

※ '19년 교육과정 위원회 결과 반영

※ 교육운영 상황에 따라 위원회 및 자문을 통해 변경 가능

- (보수교육) 지도자 자질 및 전문성 교육

영역	강좌	시수	선택사항
지도자 자질교육	학생선수 진로상담	1시간	공통
	학교체육의 변화와 발전	2시간	공통
	응급처치(심폐소생술)	2시간	공통
지도자 전문성교육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의 실제(이론 및 실습)	15시간	선택
	스포츠분석의 실제(이론 및 실습)	15시간	선택
	스포츠심리의 실제(이론 및 실습)	15시간	선택
	트레이닝방법의 실제(이론 및 실습)	15시간	선택
	코칭방법의 실제(이론 및 실습)	15시간	선택
	운동상해 예방과 관리의 실제(이론 및 실습)	15시간	선택

※ 지도자 전문성 교육은 참가 지도자가 희망하는 1강좌를 선택하여 수강
 ※ 3년 주기로 지도자 전문성 교육 6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함

○ 연도별 수료현황

(단위: 명)

연도	총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571	91	23	16	45	7	41	10	-	44	48	55	13	73	41	19	40	5	
'12	739	156	32	48	33	17	40	59	-	150	10	24	8	29	29	53	50	1	
'13	1,356	106	60	93	53	42	69	53	2	310	103	122	26	68	55	63	106	25	
'14	1,426	164	78	85	37	57	53	43	1	375	133	34	39	59	86	66	99	17	
'15(기본)	639	37	24	24	70	38	20	21	6	98	50	43	58	34	16	22	34	44	
'15(보수)	721	98	12	42	32	19	62	37		112	47	43	13	69	36	40	53	6	
'15(대학)	334																		
'16(기본)	398	35	18	27	21	19	9	7	1	81	25	4	19	20	20	47	42	3	
'16(보수)	724	54	38	55	26	16	27	32	1	182	37	49	14	27	40	42	75	9	
'17(기본)	359	36	16	32	12	13	13	9	2	78	37	13	18	3	13	29	35		
'17(보수)	662	54	18	35	30	31	22	30	1	162	59	18	17	12	57	56	53	7	
'18(기본)	478	51	16	24	41	23	19	9	3	152	28	20	13	10	16	19	25	9	
'18(보수)	824	70	32	39	43	19	40	31	3	266	45	43	19	14	33	39	80	8	
'19(기본)	401	42	32	26	24	11	13	7	4	110	14	23	27	8	10	29	13	8	
'19(보수)	780	55	32	57	38	21	33	17	4	257	17	47	22	16	32	54	73	5	
총	10,078	1,049	431	603	505	333	461	365	28	2,377	653	538	306	442	484	578	778	147	

□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는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 (취지) 학교장은 상시합숙 훈련 근절을 위한 학사관리 책무성 강조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
 -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고 소방 관련법령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선수 기숙사 전담 교직원 근무
 - ※ 여학생 학생선수 기숙사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여성사감 근무
 -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 ※ 시도별 합숙소 폐지 자체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추진
 - ※ 해당교육(지원)청에서는 원거리를 사유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불발 전·출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치
-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춘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승인 후 운영

학교운동부 기숙사 중점 점검사항

-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계획(소방 훈련 등 포함)
- 원거리 거주 학생선수 기숙사 입사
-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회계 편입
- 건축물대장 상 용도
- 기숙사 침실 등 시설물 안전관리
- 학교 (성)폭력 및 인권교육 실시
- 각종 안전시설(화재감지기, 대피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설치 현황
- 정기 또는 수시 합숙훈련 여부를 점검하여 연 2회(1,2학기) 결과 제출
 - ※ 점검결과 : 1학기 7월말, 2학기 12월말까지 공문 제출
-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폐지
 -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16.8.8) 및 장학관 협의회('16.12.27) 결정
 - ※ 시도교육청 자체계획 수립·적용에 따라 폐지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권 보장

- **(학생선수)**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공휴일)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충분한 휴식이 부족하여 부상 발생 빈도가 높고,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영양보충 등을 통해 학생선수 보호 조치
- **(학교운동부지도자)** 주 52시간 시행(19.7.1)에 따라, 주말 등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 지양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을 보장

□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 폭염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 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 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입장지도 철저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도핑방지교육 의무화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도핑방지교육 실시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 (주관기관 및 교육횟수) 교육(지원)청 주관 1회/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도핑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
 - (교육방법)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 이용 원격교육 등
- 시도교육청에서는 도핑방지교육 강사 양성 계획 수립·추진
 -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관련기관)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 ☎ 02)2045-9800
 - 금지약물검색,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 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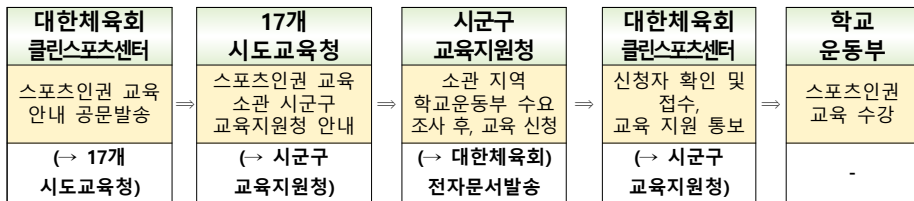
○ 시도교육청 도평방지교육 전문강사 양성 현황('19.8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34	10	10	31	0	7	5	2	28	9	1	11	7	4	5	10	5	179

□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 (사업명/주관기관)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 대한체육회
- (사업목적) 스포츠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학교체육 (성)폭력 사건 근절
- 교육개요
 - (교육대상)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학부모 등
 - (교육기간) 2020. 3 ~ 12월
 - (교육내용) (성)폭력 예방·근절 교육, 폭력·성폭력 사건에 관한 징계 규정 안내, 스포츠인권센터 업무 및 이용 안내 등
 - (교육신청) 시도교육(지원)청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 전화로 1개월 전 신청
 - * (홈페이지) <https://sports-in.sports.or.kr> / ☎ 02) 418-1119
 - (교육진행) 무료로 진행되며, 해당교육청 또는 학교에서는 교육 장소 및 관련 장비를 사전 준비

○ 스포츠인권교육 흐름도



* 단위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운동부 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단위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군구 연합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 학교 개별로 교육 지원 가능

3-3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투명한 운영

□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수립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12호(학교운동부 구성·운영)
- (계획수립) 단위학교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시켜 수립
 - 주요내용 :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일반현황,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집행,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훈련·대회 참가, 안전대책, 학부모 부담금 회계처리 준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부모 부담금(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 (학교회계 편입) 학부모 부담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약칭)*에 저촉되어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각종 대회참가 및 (해외)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성 확보
- 시도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시스템 구축 추진('21년 완료)
 - * 서울, 인천, 울산 교육청은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비용 등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중

□ 학교운동부지도자 객관적 평가 시스템 도입

- (내용)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 종합적 평가
 - (입상실적 평가 지양)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으로 인권침해 사례 등이 유발
 - ※ 서울, 경기의 경우 최근 3년간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 조항 삭제
 - ※ 직무교육, 교육청 주관 연수, 학교자체 교육 이수 여부 반영 및 미이수시 재계약 고려
- (방법) 체육부장,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
 -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4항
-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우대 방안
 - (지도교사) 학교운동부 지도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급 지급 시 우대, 승진 가산점 등 반영
 -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습권 보장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 방안 강구

☞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안내

-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채용·재계약시 기본 자격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반드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자동 변경('15.1.1~)

개정 전	개정 후
1급 경기지도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www.insports.or.kr
 - 자격증재발급 신청 : (사유) "명칭변경" / 문의처 : 02)410-1177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관련 절차

-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
- ❖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참고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관련서류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비리 발생 시 활용), 경기단체 (징계) 확인서*
 - * 학교운동부지도자 중앙경기단체 징계확인서 발급 협조 요청(2017.1.20. 문체부, 대한체육회)

□ 대입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비리 근절

- 2021학년도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 * 학생부 교과 성적 및 출석의 반영 점수 또는 비율 공개 포함

-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방식 개선
 - 최대한 객관적인 경기실적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16년~)
 - 대학 모집요강 발표 시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종목별, 포지션별 선발인원** 명시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16년~)
 - 모집인원을 '0명 내외', '0명 이내' 규정 금지('17년~)
 - 대학은 학생선발 시 학생선수의 운동(실기)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 ※ (예시) 경기실적 평가항목에 축구는 출전시간, 공격포인트(골, 어시스트 등), 야구는 타율, 안타, 도루, 방어율, 등의 객관적인 개인기록을 반영
 - 면접/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인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 참여,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 ※ 단, 실기평가는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이 아닌 공정성 위원으로 참여 가능
 - 평가위원 구성 시 복수추천, 무작위 선정 방식 권장
-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 자유롭게 지원(수시 6회, 정시 3회)할 수 있도록 공지

- 현행 특정 소수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식으로 전환 검토
 - ※ 운동에 소질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방과 후에 자유롭게 학교운동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분위기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학교운동부 활성화 도모
- (시도교육청) 지역적 특성과 여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의 다양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가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 개선 및 선진화 추진
 -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시도교육청)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최소 범위에서 허용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종목별 인원 적정화
 - ※ 학교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를 책정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계약체결
 - ※ 한 종목(단체종목 등)에 많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므로 학교별·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을 적정화하여 운영
- (민원발생) 주요 인기종목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부담금(회비) 부과로 인해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 빈발

3-4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 선진화

-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 전환
 - (초·중학교) 학생선수들의 신체적·정서적 조화로운 발달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 향상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이수
 - (고등학교) 기존 과도한 훈련중심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학생선수로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육 분야 진로개척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 사례

- ❖ **사례1.** 야구, 축구 종목 학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자녀의 공정한 대회 참가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인 부담금 추가 요구에 대한 민원
- ❖ **사례2.** 학부모 후원회 집행부 자녀 위주의 대회 참가 기회 부여, 상급학교 진학 영향력 행사 명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별도 활동비 요구,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민원
- ❖ **사례3.**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금 발생으로 학생선수 육성을 포기하고, 알고 있던 과거 비위행위 제보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 ❖ **사례4.** 해외 전지훈련 참가 시 학생선수 간 학교폭력 발생으로 학교 측과 갈등이 유발되어 학부모가 과도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 학교운동부 정기점검 실시(연 1회)

- (개요) 바람직한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운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선
- 점검대상 :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점검횟수/방법 : 연 1회 이상 / 현장방문점검
- 점검기간 : 2020. 3 ~ 8월
- 점검기관 : 시도교육(지원)청
- 결과보고 : 2020. 8. 31.까지 교육부로 보고
 - ※ 교육부에서 공문 시행하여 점검사항(서식포함)을 별도 안내할 예정
 -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 점검 실시 추진(연중)
- 중점 점검사항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운위 심의 거쳐 계획수립(내부결재)
-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준수
- 최저학력제 도달 여부 확인,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제공·운영
- e-school 시스템 활용, 학습노트 작성
- 학교운동부 훈련일지 작성 및 확인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1회) 및 면(상)담 활동(월 1회)
- 해외전지훈련 실시 절차 준수
-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 학부모부담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회계 편입, 공개 및 개별통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기본교육(채용 후 1년 이내), 보수교육(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 인권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2시간)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 ※ (연수주관) 기본교육·보수교육→국민체육진흥공단,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표준계약서 작성
-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 여부,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현황(안전관리, 사감 운영 등)
-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현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

○ 점검결과 사후조치

- 시도교육청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감사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 이행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수수 입학비리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계약 해지*하고,
 -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4항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고 및 통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 단위학교 ⇨ 시도교육청 ⇨ 교육부·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회신기한 : 90일) ⇨ 교육부·시도교육청



- (학생선수)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입학비리 연루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근거 마련하여 시행
 -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주요 비위행위의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반성과 자숙을 위해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규정 적용)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부적절한(폭력 등) 행위 발생 시 시도교육청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 준수
 -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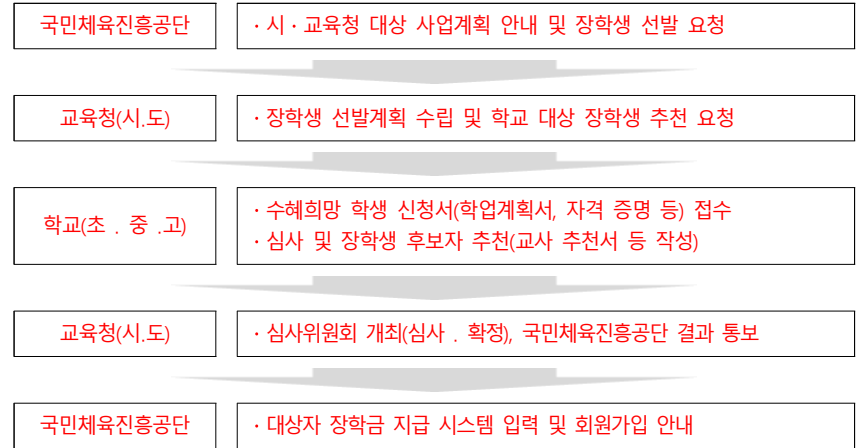
구분	내용	가중 처벌
폭력 행위	·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 -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계약 금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또는 영구 계약 금지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하고, 3회 적발된 자는 영구 계약 금지
성 관련 범죄 행위	· 성추행, 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계약금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계약금지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 또는 영구 계약 금지	
	·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 영구 계약 금지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우수체육 인재가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으로 안정적 환경 조성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산 내역) 57억 원(체육진흥기금, 민간경상보조)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선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사업 내용) 매년 약 1,300여 명의 유망주를 선발, 월 40만원 지원(10개월)
- 장학금 : 5,400백만원
- 운영비 : 300백만원(장학생 바우처시스템 구축, 운영 등)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선발인원과 장학금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1인당 10개월 40만원 이내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사용부문	지원내용
스포츠	스포츠용품, 장비, 체육복(유니폼) 구입,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등 스포츠역량 향상 재화·용역 구입비
학 습	자기주도 학습, 교육서적, 교재 구입비 등, 학생별 특성에 따른 잠재력 개발 관련 재화·용역 구입비

○ 지원 체계



□ 체육특기자 진학 및 전·출입제도 개선

-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완화
- 시도교육청별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배정 시 경기실적 반영 비율 축소
- 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선수등록규정 사전 고지
- 학생선수 학부모 동의를 거쳐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신청
- 학부모와 학생선수에게 선수등록 절차 및 준수사항을 사전 고지 하고, 전학(이적) 후 선수등록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 정상적인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동의서 발급
- 학교장은 학생 주소 이전 등 정상적인 전학 사유 발생 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동의서 발급
-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 해외전지 훈련 관리 절차

- 해외 전지훈련은 가급적 자제 및 지양하되, 방학기간 중 실시가 원칙이며, 해당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사전·사후 보고 및 결과공개 철저히 이행
- 국가대표 훈련, 국제 교류전 등 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훈련에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경우 허용하며, 그 외 해외 전지훈련은 가급적 지양
- 학교장은 기관 및 학부모회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학부모 부담경비 최소화, 학교폭력 예방 등을 고려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2호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관계자가 숙소 및 훈련장 등에 사전 답사 의무적으로 실시
 - 학생 안전이 확보되고,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 이용
 - *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세부 절차(예시)

단계	내 용	담당 기관(단체)	비 고
1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	주관기관(단체)→학교	- 개인별 학부모동의서 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 실시 여부 결정
3	사전 보고 및 참가 현황공개	학교→교육청	- 1개월 전까지 -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4	사전답사	학교	- 학교관계자 숙소 및 훈련장 등 사전답사 의무적 실시
5	전지훈련	주관 기관(단체)	- 안전사고 예방 유의
6	사후 보고 및 결과공개	주관기관(단체)→학교 →교육청	- 귀국 후 15일 이내 -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 사전보고 : 전지훈련 1개월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지훈련계획서 제출 (인원, 일정 및 경비 등 포함)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사후보고 : 전지훈련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서 제출 ⇒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안내

-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내 용
1	학부모 요구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
2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방과 후 학교 포함) 등에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 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것만 인정하고 있음
4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 * ⑬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 준수하여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 학부모회 요구⇒계획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회계 편입⇒집행

□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및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갑질행위 사례 발생
- 학생 및 학부모는 갑질행위 발생 시 대회 출전 제한과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 제기나 신고를 꺼려하는 현상 발생

○ 개선 방안

- (채용절차 공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적격자 채용
 - ※ 다면평가 등을 통해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 (예방교육 의무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항)
 - ※ 학생선수 인권보호,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시비리 예방, 지도자 직무연수 실시

- (운동부 운영·관리) 학교장은 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지도자 재임용에 반영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교육적·과학적 지도방법 적용 등

- (비위행위 처리)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조치(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

4.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

4-1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 학교스포츠 정상화 안정적 지원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투명하고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스포츠 정상화 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정책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
 - 미 배치 및 사업목적 외 배치 시 인력 회수 예정
 - ※ 교육부 교육협력과 4042~4057('19.9.11., 시도별 호수가 다름) 참고
-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 정상화 담당 인력 확보 및 관련 업무 추진

<’20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학교스포츠 정상화) 확정 산정>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	1	1	1	1	1		1	2	1	1	1		1	1	1		16

□ 시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회 협력 체계 구축

- (설립) 학교체육 정책의 집약적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17개 시도교육청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18.10.26. 창립총회)
 - 교육부, 시도교육청,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
- (주요기능)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일반학생) 및 학교운동부 운영, 일반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 운영·관리
- (사업 운영)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 및 각종 공동사업 위탁
 - (사업 위탁 주관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 (예산) 총 1,190백만원 (17청×70백만원, 시도교육청 교특 예산)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체육단체, 교원학습공동체, 학교가 참여하는 체육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활성화 사업 예시

- ❖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시 공공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추진
- ❖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주변 지역 사회의 스포츠 관련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스포츠활동 맵 제작 배포 등)를 학교·학생들에게 제공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중앙위원회, 지역위원회)

- (목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
 - ※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역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조직)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외 광역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 위원회,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회의 개최 정례화 및 다양화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서면 회의 등을 적극 활용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상시적 운영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 * 구성 예시 : 1분과(정과체육·학교스포츠클럽), 2분과(전문체육)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례

- ❖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장학금 지급 및 학교운동부 지원
-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운동부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지원
 - 구성은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 인원으로 조직
 - 시도교육청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컨설팅 강화

4-2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 학교체육 활성화 연수를 통한 대국민 홍보

-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주관 각종 연수에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및 정보 제공으로 교원의 인식 개선
- 단위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정책 연수,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적극적 반영 운영

시도교육청(연수원) 연수 과정 개설 및 운영

- ❖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이해(교장, 교감, 교사)
-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 및 운영(중학교 담당 교사)
- ❖ 초등 체육지도 교사 직무연수(초등체육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 우수 사례 발굴 홍보 확대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홍보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과 여론의 주목을 높이고 지속적 인식개선 도모
 - (언론) 학교체육 관련 보도·홍보 자료 배포, 미담사례 발굴 홍보, 기획 기사 작성 등('20.5월~)

- (캠페인 전개)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나눔 행사, 유명 체육 재능기부와 연계한 캠페인 활동 전개('20.6월~)
- (홍보동영상, 브로슈어 제작)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동영상, 브로슈어, 우수사례 발굴·보급('20.9월~)
- (현장 방문)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운영학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20.10월~), 시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20.9~10월)
- (홈페이지, SNS) 학교체육진흥회 홈페이지 및 SNS등 활용 홍보('20.3월~)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별 우수사례 발굴 및 체육진로 교육 동영상, 건강체력교실 영상 자료 등 자료 보급
- 학교체육진흥회 홈페이지, Edunet을 통한 동영상,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우수사례 자료 보급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우수사례, 자유학기제 체육운영 우수사례, 체육 수업 우수 자료 보급

□ 학교체육 유공자 표창

- (내용) 체육교육 질 제고, 학교스포츠클럽, 초등 수영실기교육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 실시 확대
- (대상)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체육 분야 유공자(교직원,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민간인 등)
- (시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상장
※ 학교체육 포상 관련 세부 계획은 추후 안내('20.10월 예정)
- (학교체육대상)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 각 분야의 실천 노력을 조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학교체육대상 수상('20.11~12월)

4-3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

□ 배경 및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의결*)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체육시설사용 요구 증가와 이에 따른 시설 사용 불만 민원 발생이 증가하여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19.10.)
- (특정단체 독점) 특정 단체 등에 장기간 사용 및 사전예약 허가로 다수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제한
- (예약시스템 부재)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예약자 현황 비공개 등으로 예약과정의 투명성 결여 및 사용신청 곤란
- 학교체육시설 이용 관련 법령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19.10)

-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 (사용기간) 특정 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일·시간)에 관한 기준 마련
 - (사용순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리 규정에 명시
- 예약의 투명성 확보
 - (예약시스템 구축) 학교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 편의 제공
 - (예약현황 공개) 사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등의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공개하여 예약의 투명성 확보

○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올바른 시설사용 및 제한사항 안내)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적발 시 시설사용을 일정기간(예: 30일 간) 제한하고 위반행위 공개 등

□ 조치 협조사항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19.10.)

○ (시도교육청) 시도별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등에 해당 내용 반영 및 개정 추진

※ 단, 통합시스템 구축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치기한을 '21.3월로 설정

○ (국립학교) 국립학교 시설 등의 사용은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국립학교는** 지역여건 및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 따른 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학교별 지침 마련**

※ 통합예약시스템은 지역여건 및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교육청 통합시스템에 포함 운영

V. 2020년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 체육수업 내실 및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 학교체육 역량 강화 연수													
○ 초·중·고 체육 전문인력 지원													
○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운영													
○ 체육 중점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②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운동하는 모든 학생)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운영 내실화													
○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동 프로그램 지원확대													
③ 체육인재 육성체계 변화(공부하는 학생 선수)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④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대국민 인식제고													
○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 단위학교 자율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VI. 협조 요청사항

□ 시도교육청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부 제출 기한
기본계획 수립	① 「2020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20. 2.) ②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예산 확보	③ 생존수영실기교육 학생 교육비, 초등학교원 연수비, 이동식 수영장 지원 예산 ④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예산 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역리그·전국대회 지원 예산 ⑥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예산 ⑦ 실내체육시설, 탈의실 등 학교체육 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 ⑧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예산 ⑨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관련 예산	
모니터링 (건설팅 및 현장점검)	⑩ 학교체육 주요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강화 - 초·중·고 체육교육과정 편성 현황 점검 - 건강체력교실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구, 중점학교) 컨설팅 - 체육전담교사 배치 현황 파악 -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및 활동 현장 점검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장 점검 - 학교운동부(기숙사 포함) 방문 점검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실태 점검	연중
규정·제도 제정 및 개선	⑪ 고입 체육특기자, 생존수영실기교육, 학교운동부 운영·지원 관련 시도 조례 및 규칙 관리	연중
관련 자료 제출	⑫ 체육전문인력(전담교사, 강사 등) 배치 현황 보고 ⑬ 중·고 체육교육과정 편성 현황 보고 ⑭ 7560+ 실천 지원학교 명단 ⑮ 학교운동부(기숙사 포함) 방문 점검 결과 보고	'20. 3월중 '20. 3월중 '20. 3월중 '20. 8월중

□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기 관	협조 요청사항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각종 대회 운영 지원 ◦ 생활SOC 연계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학교체육 시설·환경 개선 지원 ◦ 스포츠 자원봉사제 운영 지원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운영 협조 ◦ 스포츠 바우처 제도 운영 및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공 스포츠클럽(학교연계형) 사업 운영 및 학생 참여 스포츠클럽 확대 추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계획 수립·추진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지역·전국)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대회 개최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목 지역 클럽팀 참가 허용 확대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에 체육지도자 지원 확대 ◦ 학교와 지역스포츠클럽활동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스포츠타마당 등 스포츠클럽과 전문체육이 연계하는 통합대회 운영 지속 확대 ◦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관련 협조 및 이력 시스템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기본교육·보수교육 운영 내실화 및 이수자 이력 관리 	
학교체육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 관련 연구(학교운동부 운영 규정 개발,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 교육부-시도교육청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주관 ◦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전, 	

VII. 행정 사항

- 학교체육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추진(유관기관, 연중)
- 시·도별 학교체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출(시·도교육청, ~'20.3월중)
-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선정·결과보고(시·도교육청, ~'20.3월중)
- 2020년 학교체육 전문인력(스포츠강사, 체육전담교사)지정·결과보고(시·도교육청, ~'20.3월)
- 학교운동부 방문점검 결과 제출
-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추진(시·도교육청, 연중)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 현황
 - 건강체력교실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파악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점검
 - 학교체육 교과연구회, 교사 동아리 운영 실태 점검
 -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실태 점검
 - 학교체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실태 점검
- 2020년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 집행결과 제출(시도교육청, '21.1월)

붙임 1

2020년도 학교체육 관련 특별교부금 사업 계획

1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 목적 및 내용

- (목적) 학교단위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학생 체력 향상 및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체육에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직업·진로 개척 기회 제공
- (주요내용) 7560+ 운동 지원, 여학생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교육 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 세부내역

- (7560+ 운동) 7560+ 운동을 통해 줄넘기, 건강달리기 등을 아침 수업 전, 점심시간, 방과후 활용 학교단위 자율 체육프로그램 실시
 - (사업예산) 381교×5백만원=1,905백만원
 - ※ 시도교육청 신청 수 반영, 경기교육청 해당 사업 미선택
- (여학생체육 활성화 지원) 여학생의 운동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 스포츠 참여 캠페인 활동 등 시도별 특색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운영 지원
 - (사업예산) 16청×30백만원=480백만원+632백만원(여학생수 비율)=1,112백만원
 - ※ 경기교육청 해당 사업 미선택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560+	200	100	150	100	100	50	30	20	0	90	70	220	125	150	200	150	150	1,905
여학생	168	80	71	80	59	57	51	40	0	55	57	68	62	61	71	90	42	1,112
예산	368	180	221	180	159	107	81	60	0	145	127	288	187	211	271	240	192	3,017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지원) 일반학급 교육과정 외 체육 계열의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별도학급 구성)하거나 교육과정

자율편성 단위에 체육 관련 과목(진로과목, 전문과목 등)을 추가 편성하여 희망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 부여 및 체육진로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사업예산) 학급구성형 학급당 20백만원 내외, 과목편성형 학교당 15백만원 내외
 - ※ '19년 미집행 금액 반영하여 교부
 - ※ (이월현황) 부산 20백만원, 강원 40백만원, 경북 20백만원, 경남 20백만원
- (학급구성형) 67학급×20백만원=1,340백만원-80백만원(이월액)=1,260백만원
- (과목편성형) 18교×15백만원=270백만원
- (체육계열 진로교육) 9청×5백만원=45백만원+25백만원(추가교부)=70백만원
 -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교육청 기본 운영비 5백만원 교부
 - ※ 주관교육청(서울) 10백만원, 10교 이상 운영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5백만원 추가 교부

(단위: 학급수, 학교수,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급 구성형 (학급수)	22	9	2	7	0	1	0	0	13	4	0	5	0	0	4	0	0	67
과목 편성형 (학교수)	7	0	0	3	0	3	0	0	3	1	0	1	0	0	0	0	0	18
예산	565	165	45	195	0	70	0	0	315	60	0	120	0	0	65	0	0	1,600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목적 및 내용

- (목적)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 (주요내용)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및 개최,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세부내역

-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지원)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상시적으로(1, 2학기) 운영하는 등 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인성 및 건강체력 함양
 - (리그운영지원단 운영) 교육지원청 관내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그 운영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사업예산) 1,450백만원
 - ※ 시도교육청 학생 수 비율에 따라 교부
 - ※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 보조 가능
-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참가 및 개최비 지원
 - (사업예산) 2,750백만원
 - ※ 시·도교육청별 참가비 105백만원 정액 교부, 제주도 70백만원 추가 지원
 - ※ 개최비는 '19년 지원액 기준으로 지급, 주관교육청(서울) 운영비 45백만원 추가 지원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사업예산) 16청x50백만원=800백만원 (※ 광주교육청 해당사업 미선택)

□ 추진일정

- 시·도교육청에 예산 교부('20.1월) → 시·도교육청별 실행 계획 수립('20.2월) → 사업 추진(연중) → 성과 평가('20.12월)

□ 시도교육청별 예산배정(안)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역 집중 지원	230	83	69	83	48	45	35	15	365	41	46	64	54	51	70	100	21	1,450
전국 축전 만족	222	192	182	138	155	138	138	171	0	171	185	185	171	171	168	138	225	2,750
마을 단위	50	50	50	50	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800
예산	502	325	301	271	203	233	223	236	445	262	281	299	275	272	288	288	296	5,000

③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 목적 및 내용

- (목적) 초등학생 대상 수상 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실기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 배양
- (주요내용)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생존수영실기교육을 '20년 초등 1~6학년 확대 운영

□ 세부내역

-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은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1~6학년 확대실시에 따라 본예산, 추경 등을 통해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을 포함한 실기교육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권장
 - (사업예산) 7,710백만원
 -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교·강사 연수비 등
 - ※ 해당 사업을 신청한 17개 시·도교육청 신청액에 따라 차등 교부
-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지원) 도서·산간 지역 등 수영시설의 부재로 생존수영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예산) 2,550백만원
 - ※ 해당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도 교육청 신청액에 따라 차등 교부
 - ※ 대구, 광주, 세종, 전북, 제주교육청 해당사업 미선택

□ 추진일정

- 시도교육청에 예산 교부('20.1월) → 시도교육청별 실행 계획 수립('20.2월) → 사업 추진(연중) → 성과 평가('20.12월)

□ 시도교육청별 예산배정(안)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영 교육	695	497	742	528	199	451	239	80	1276	119	348	616	258	388	656	382	236	7,710
이동식 수영교육	200	250	0	250	0	200	250	0	250	200	150	300	0	100	200	200	0	2,550
예산	895	747	742	778	199	651	489	80	1,526	319	498	916	258	488	856	582	236	10,260

참고

2020년도 시도교육청별 예산(특별교부금) 예산 교부

(단위 : 백만원)

시도	① 학교체육활성화			②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③ 초등(생존)수영교육 지원		합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560+ 운동 활성화	체육교육 과정 특성화 학교운영	지역단위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 운영	전국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 참가 및 운영	마을단위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초등생존수영교육	이동식생존수영교육 지원	
서울	168	200	565	230	222	50	695	200	2,330
부산	80	100	165	83	192	50	497	250	1,417
대구	71	150	45	69	182	50	742	-	1,309
인천	80	100	195	83	138	50	528	250	1,424
광주	59	100	-	48	155	-	199	-	561
대전	57	50	70	45	138	50	451	200	1,061
울산	51	30	-	35	138	50	239	250	793
세종	40	20	-	15	171	50	80	-	376
경기	-	-	315	395	-	50	1,276	250	2,286
강원	55	90	60	41	171	50	119	200	786
충북	57	70	-	46	185	50	348	150	906
충남	68	220	120	64	185	50	616	300	1,623
전북	62	125	-	54	171	50	258	-	720
전남	61	150	-	51	171	50	388	100	971
경북	71	200	65	70	168	50	656	200	1,480
경남	90	150	-	100	138	50	382	200	1,110
제주	42	150	-	21	225	50	236	-	724
계	1,112	1,905	1,600	1,450	2,750	800	7,710	2,550	19,877

붙임 2

학교체육 관련 국정과제 추진

□ 초·중·고 문예체육교육 활성화(50-1)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내실화
 -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구축·운영 : ('18) 177개청 ('19) 177개청

□ 초등 생존수영교육 확대(54-4-4)

- (초등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등 생존수영교육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운영
 - ※ ('18) 3~6학년 → ('19) 2~6학년 → ('20) 1~6학년
- 초등학교 대상 수영 실기교육 활성화와 실용적인 생존수영 지도 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수영교육 교원연수 실시
 - ※ 교원연수 실시 현황 : ('17) 299명 → ('18) 760명 → ('19) 810명

□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72-5)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최저학력제 적용, 온라인(e-school) 보충학습 제공 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현황 조사(연 2회)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운영과 보충학습을 위한 e-school 시스템 제공
 - ※ e-school 운영 : ('18) 2,300교(37,000명) → ('19) 3,069교(49,090명)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정규 교육과정 내 체육 분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진로프로그램 적용으로 진로개척 역량 강화
 - 일반고에서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체육에 소질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프로그램 적용 및 대학 입시정보 제공 등
 - ※ 체육중점학교 운영 : ('17) 57학급 → ('18) 53학급 → ('19) 51학급 → ('20) 85학급
 - ※ 사업명칭 변경 : ('19) 체육중점학교 → ('20)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본질 회복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학사·진학관리 전담기구로서 학교체육진흥회* 설립·운영
 - 학생선수의 체계적인 학사·진학관리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운영 추진
 - * 17개 시도교육청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 형태의 사단법인으로 설립('18.12.)
- (학생체육축제 개최) 현행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부를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포함시켜 초·중·고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학생체육축제' 운영 검토
 - 학생선수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초·중) 및 전국체육대회(고·대학·일반)에서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승부욕 등으로 비교육적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학생선수 저변 확대와 초·중·고-대학-전문·생활체육 선순환 체계 구축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일반학생이 학생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 추진

붙임 3

학교장 확인서(지역 및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지역 및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2020.3.1 이후 적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서울 ○○초		종목명	농구
			허용일수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학교 담당자	성명		종별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연락처	(지역번호)000-0000	적용년도(기간)	2020 (’20.3.1 ~ ’21.2.28)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제 확인 현황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허용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허용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1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 작성방법

- ① 학교급별 허용일수 적용: 대회·훈련 참가 누적사용일수 기입 / 허용일수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예) 현재 참가하는 대회기간까지 포함하여 출석인정결석일수 총합이 10일 경우 ⇨ 표기: (고) 10/40
- ② 최저학력제: 단위 학교에서 확인 여부만 표시 ※ 학교장 확인: ○표시, 학교장 미확인: × 표시
 - ※ ‘×’ 표시는 최저학력 미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학교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년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 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
 - (관련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규정(예시)

<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효율적인 배정 및 운영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 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당하게 계약해지 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5. (성)폭력 행위 등 기존 학생선수 보호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시·도교육청 체육 담당 과장, 장학관이 된다.
- ③ 위촉 위원은 학교의 장, 체육단체 담당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교육감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 체육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담당 장학사로 한다.
-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시·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정의

- 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체육 관련 경기/대회 참여 경력이나 자격·성적·입상(수상)실적을 요구/활용하는 전형

○ 일반 사항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경우,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을 설정함
 -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의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 대학은 지원자격 및 선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모집요강에 전형요소별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제시된 전형일정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자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수 없으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전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 개개인이 대학 및 모집단위를 충분히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예 : 학생 본인의 지원 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 사전 스카우트·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서류를 지칭함

○ 자격 기준

-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 기준을 권장함
-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기간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함
- 종목별 세부적인 자격 심사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함
-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함

○ 전형방법

- 전형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해야 함
 -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시행(최저학력보장제)에 따라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반영비율 및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해야 함(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 필수, 반영비율은 대학 자율 설정)
 -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초·중·고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도입
 - 실적평가 시에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모집요강에 상세하게 공개함을 권장함
 -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며, 면접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및 비율은 최소화함(실기 운영 시 종목별 공동실기를 권장함)
 - 실기평가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함. 1인 이상의 타 대학교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 또는 공정성 위원으로 참여해야 함
 - 면접평가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함. 1인 이상의 타 대학교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1인 이상의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함. 또한 공정성 위원이 면접평가 시 참관해야 함
 - 평가위원 구성 시 복수추천, 무작위 선정 방식 권장
- 경기 실적의 경우,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개인 경기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
- 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생선수를 선발하도록 권장함
 -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

제4절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제18조(선발절차의 공정성) 학생선수의 선발은 그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수 선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운영하며, 체육부장·운동부장·경기지도자 등 대학스포츠 관계자가 학생선수 선발에 있어서 협의회 및 대학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19조(입시비리 행위의 금지) ① 대학은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유인하거나 그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동문·후원 등의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통하여 예비학생선수나 그 가족, 또는 소속 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하게 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각종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2. 예비학생선수의 끼워넣기식 선발
3. 기숙사나 단체 합숙용 공용주택과 같은 통상의 제공 범위를 넘어선 주거 등에 대한 무상이용의 제공
4. 예비학생선수의 학업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지원서비스의 제공
5.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에 대한 스폰서십 제공
6. 그밖에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익제공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입시비리 행위가 행하여진 대학에 대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제60조 이하에 따른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입시 전 운동능력 측정의 금지) 대학은 공개 시험 이전에 대학 안팎의 모든 장소에서 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캠프나 클리닉을 주최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나 조직이 주최하는 행사가 대학 밖에서 실시되고, 또한 그 행사가 모든 대학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

제21조(입학전형) ① 체육특기자 입학시험의 전형요소는 수학생력시험성적, 고등학교학생기록부, 실기시험성적, 면접시험성적, 경기실적점수 등으로 한다. 단,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자는 검정고시성적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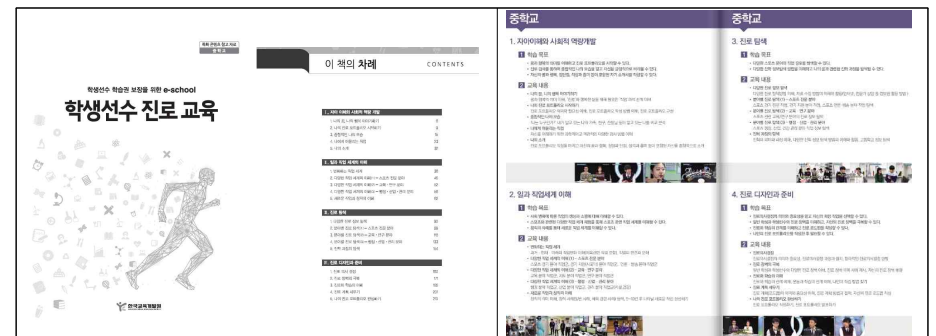
② 경기실적 점수는 각종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의 경기성적을 대회의 규모나 중요도 등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가점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가 마련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표준요강)에 따라, 대학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있어서 수학생력시험성적 또는 내신성적 등 학업성적을 일정수준이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지원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중학교 e-school 진로 강좌(<http://ms.e-school.or.kr/special.do>)

영역	차시	학년
1.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나의 꿈, 나의 행복 이야기하기	1학년
	2. 나의 진로 포트폴리오 시작하기	
	3. 종합적인 나의 모습	
	4. 나의 모습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5. 나의 소개 -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2. 일과 직업 세계 이해	1. 변화하는 직업 세계	1학년 2학년
	2. 다양한 직업세계의 이해(1) - 스포츠 전문 분야	
	3. 다양한 직업세계의 이해(2) - 교육 연구 분야	
	4. 다양한 직업세계의 이해(3) - 행정/산업/관리분야	
	5. 새로운 직업과 창작의 이해	
3. 진로 탐색	1. 다양한 진로 정보 탐색	2학년 3학년
	2. 분야별 진로 탐색(1) - 스포츠 전문 분야	
	3. 분야별 진로 탐색(2) - 교육 연구 분야	
	4. 분야별 진로 탐색(3) - 행정/산업/관리분야	
	5. 진학 과정의 탐색	
4. 진로 디자인과 준비	1. 진로 의사 결정	3학년
	2. 진로 장벽의 극복	
	3. 진로와 학습의 이해	
	4. 진로 계획 세우기	
	5. 나의 진로 포트폴리오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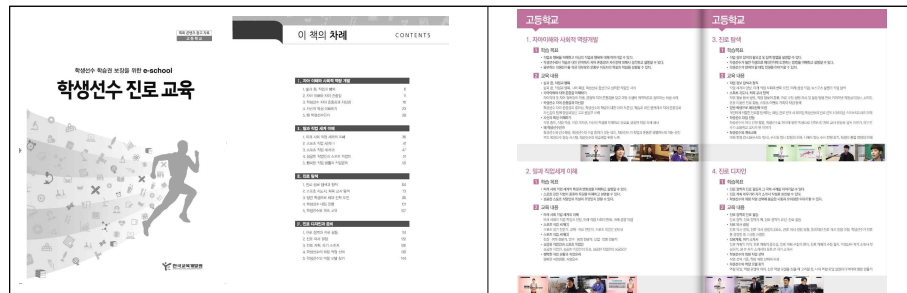
☐ 교사용 참고 자료 및 학생용 리플릿 제공



□ **고등학교 e-school 진로 강좌**(<http://hs.e-school.or.kr/special.do>)

영역	차 시	학년
1.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삶과 꿈, 직업과 행복 1학년	1학년
	2. 자아이해와 자아 존중감	
	3. 학생선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	
	4. 자신의 특성 이해하기	
	5. 왜 학생선수인가?	
2. 일과 직업 세계 이해	1. 미래 사회 직업 세계의 이해	1학년 2학년
	2. 스포츠 직업 세계 이해하기(1)	
	3. 스포츠 직업 세계 이해하기(2)	
	4. 성공한 직업인과 스포츠 직업인	
	5. 행복한 직업 생활과 직업윤리	
3. 진로 탐색	1. 직업 정보 탐색과 창작	2학년 3학년
	2.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제도와 체육교사 직업 탐색	
	3. 학생선수가 일반학생으로 체대진학 도전하기	
	4. 학생선수가 알아야할 대입 전형	
	5. 학생선수를 위한 계속 교육의 이해와 탐색	
4. 진로 디자인과 준비	1. 진로 장벽과 진로 갈등 3학년	3학년
	2. 진로 의사 결정	
	3. 진로 계획세우기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4. 학생선수의 희망 직업 선택	
	5. 학생선수의 역할 모델 찾기	

□ **교사용 참고 자료 및 학생용 리플릿 제공**



붙임 8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0조의2(소위원회)

기관	위원회	역할	관련법규
교육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단위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체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시도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각종 위원회 통·폐합**

- 가능한 법적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영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6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학습훈련

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14763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5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어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제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제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2016. 12. 30.>

부칙 <제28354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의 기준성적이 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춘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2. 3.]

부칙 <제188호, 2019. 9. 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 5. 22., 2016. 3. 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 1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6. 1. 10.]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

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4.>

[본조신설 2006. 1. 10.]

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4. 학교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16. 3. 4.]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 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2016. 3. 4.>

②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16. 3. 4.>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제목개정 2016. 3. 4.]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삭제 <2016. 3. 4.>

⑤ 삭제 <2016. 3. 4.>

[제목개정 1997. 12. 31., 2006. 1. 10.]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1999. 3. 8., 2006. 1. 10.]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 10.]

부칙 <제188호, 2019. 9. 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시도별 체력인증센터 현황

연번	시도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1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02-410-1014
2		마포	마포구민체육센터	02-337-7815
3		성동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02-2286-7190
4		서초	서초구민체육센터	02-591-5999
5		금천	금천구보건소	02-2627-2748
6		노원	노원프레미어스엠코빌딩	02-948-4175
7		동작	사당종합체육관	02-591-0101
8	부산	남구	남구국민체육센터	051-626-8215
9		북구	북구국민체육센터	051-362-7008
10		사하구	사하구국민체육센터	051-202-3500
11		사상구	사상구국민체육센터	051-326-0100
12		광역시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및 테니스경기장	051-550-1631
13	대구	달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053-634-8602
14	인천	연수	가천대학교	032-820-4889
15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	062-955-9109
16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062-230-7419
17		북구	북구태봉생활체육관	062-716-6100
18	대전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042-485-7330
19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스포츠시설	052-259-1471
20	세종	세종	종촌동복합커뮤니센터	044-868-8323
21		화성	화성국민체육센터	031-278-7548
22	경기	부천	오정레포츠센터	070-7707-5305
23		오산	오산시정	031-8036-7676
24		성남	성남종합스포츠센터	031-739-6717
25		의정부	의정부종합운동장	031-828-2100
26		시흥	정왕어울림국민체육센터	031-315-7338
27	강원	원주	원주국민체육센터	033-762-0110
28		강릉	카톨릭관동대학교	033-649-7711
29		삼척	삼척캠퍼스 생활체육관	033-570-6857
30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스포츠센터	033-250-6793
31	충북	청주	청주종합운동장	043-485-7330
32		영동	영동국민체육센터	043-740-1607
33		충주	충주종합운동장	043-852-7330
34		증평	증평생활체육관	043-835-4171
35	충남	천안	천안종합운동장	041-622-9348
36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041-547-7336
37		계룡	구룡콘도 1층	042-840-6302
38	전북	남원	춘향골체육관	063-633-7330
39		전주	전주화산체육관	063-221-7330
40		군산	군산월명체력증진센터	063-454-8761
41	전남	목포	목포국제축구센터	061-278-0155
42		순천	문화건강센터수영장	061-749-8946
43		곡성	곡성레저문화센터	061-363-4337
44		나주	동신대학교체육관	061-330-3388
45	경북	포항	장량국민체육센터	054-272-8519
46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054-854-7338
47		김천	김천시 종합운동장	054-433-0020
48		구미	경운대학교	054-479-1369
49	경남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055-712-0781
50		사천	사천국민체육센터	055-835-2066
51	제주	제주	종합경기장 수영장	064-759-8795

붙임 11

시도교육청별 학생 탈의실(환복 공간) 확충 소요 예산

<기준: '19.8.1.기준, 단위: 교/개/천원>

시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합계		
	학교	수량	예산	학교	수량	예산	학교	수량	예산
서울	453	7,453	4,471,800	79	1,394	836,400	532	8,847	5,308,200
부산	134	2,054	1,232,400	57	936	561,600	191	2,990	1,794,000
대구	89	1,246	747,600	22	318	190,800	111	1,564	938,400
인천	183	2,711	1,633,800	34	550	330,000	217	3,261	1,963,800
광주	88	1,320	792,000	15	262	157,200	103	1,582	949,200
대전	125	1,983	1,189,800	21	337	202,200	146	2,320	1,392,000
울산	62	980	588,000	8	136	81,600	70	1,116	669,600
세종	27	437	262,200	1	20	12,000	28	457	274,200
경기	553	8,503	5,101,800	78	1,246	747,600	631	9,749	5,849,400
강원	93	852	511,200	14	170	102,000	107	1,022	613,200
충북	115	1,593	955,800	32	425	255,000	147	2,018	1,210,800
충남	99	1,148	688,800	21	301	180,600	120	1,449	869,400
전북	148	1,609	965,400	16	214	128,400	164	1,823	1,093,800
전남	213	2,050	1,230,000	22	230	138,000	235	2,280	1,368,000
경북	316	3,565	2,139,000	19	274	164,400	335	3,839	2,303,400
경남	291	3,897	2,338,200	17	212	127,200	308	4,109	2,465,400
제주	49	617	370,200	6	90	54,000	55	707	424,200
합계	3,038	42,018	25,218,000	462	7,115	4,269,000	3,500	49,133	29,487,000